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9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민형배·김문수·정동영

이개호 • 박지원 • 안도걸

박해철 · 문정복 · 양부남

김재원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6일"을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개월까지" 를 "1년간"으로 한다.

제108조의3제3항 전단 중 "6개월까지"를 "1년간"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및 거목 중 "6개월까지"를 각각 "1년간"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6항 및 제10 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

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지 등) ①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	<u>1일</u>
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	
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	
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	
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	6
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	
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	
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	
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	
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	

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 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 의 선거일 후 <u>6개월까지</u> 보관 하여야 한다.

⑦ ~ ⑭ (생 략)

-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지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② (생 략)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ㅈ ·② (생 략)

<u>1년간</u> -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u>-</u>
<u>년간</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타. (생 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 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 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 사를 한 자

③
1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u>1년간</u>

하. (생략)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생 략)

2. ~ 4. (생략)

④·⑤ (생 략)

第268條(公訴時效) ①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舉日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 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

하. (현행과 같음)
거
· 1.
<u>1년간</u>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第268條(公訴時效) ①
<u>1년</u>
<u>1년</u>
•
·
(2)

온 날부터 <u>6개월</u> 을 경과함으로	<u>1년</u>
써 완성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